

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

(안병국 의원 대표발의)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5년 11월 24일

나. 제 출 인 : 안병국 의원 등 10인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11월 25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

•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(2025. 12. 18.) 상정 · 질의답변 · 토론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정이유

○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
○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
○ 의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안 제4조)

○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개별 교육연수 지원 및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박찬호)

- 본 조례안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¹⁾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하며 교육의 계획적·체계적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)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9. 14.>